

## 학생생활지도규정

제정 2002. 3. 1      개정 2010. 7. 1

개정 2017. 8.14      개정 2020.06.02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생의 개별 활동 및 학생회 활동을 지도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학생증

**제2조(교부)** 본 대학교에 입학수속을 완료한 학생은 즉시 학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제3조(휴대)** 학생은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학생증을 휴대하지 아니한 자는 수강 및 수업을 금할 수 있으며 도서 열람실의 출입을 금한다. 또한 본 대학교 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생은 반드시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분실)**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학생취업처에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반납)** 학생증은 졸업, 퇴학, 제적 및 유효기간 경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생취업처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3장 학생생활지도위원회

**제6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재학생의 건전한 학생활동과 조화로운 인격향상을 도모하고 바람직한 대학생활을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7.8.14.]

**제7조(구성)** 본 대학교의 학생지도 및 동아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학생취업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7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학생취업처 직원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7.8.14.]

**제8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7.8.14.]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2. 학생자치활동 지도에 관한 사항
3. 지도교수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제반 사항
4. 학생상벌 및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5. 학생회 조직 및 편제에 관한 사항
6. 동아리 승인 및 취소, 지원금 분류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0.06.02.>

## 8. 기타 관련사항

[본조 신설 2017.8.14.]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17.8.14.]

**제11조(결과보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본조 신설 2017.8.14.]

## 제4장 집회 및 행사

**제12조(집회 및 행사)** ① 학내의 모든 집회 및 행사는 반드시 실시 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해서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생취업처에 제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학과 단위 행사는 학과장을 경유해서 학생취업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집회 행사 승인 신청서

2. 세부 계획 및 예산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3. 관련된 유인물

② 학내의 모든 집회 및 행사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집회 및 행사는 승인된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종료 후 3일 내에 실시 결과를 학생취업처에 보고한다.

④ 집회 및 행사와 관련하여

1. 외부 인사를 초청하고자 할 때에는 초청 승인 신청서를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생취업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 사회단체로부터 후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후원의뢰 승인신청서를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생취업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학생의 집회 및 행사가 그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고 학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학칙 제50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 제5장 유인물 및 간행물

**제13조(유인물)** ① 각종 유인물(프린트 및 인쇄물)을 제작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취업처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내외의 광고 및 유인물을 제작 배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다음의 서류를 학생취업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광고문안 1부.

2. 유인물 5부. 단, 집회·행사에 관련된 모든 광고 및 유인물의 게시배부는 집회행사 승인에 가름한다.

**제14조(간행물)** 총학생회 각 부서, 각 단체, 각 학과에서 간행물을 발간할 때에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1. 간행물을 편집 및 인쇄 배부하는 전 과정에서 총장이 임명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다음의 서류를 구비해서 계열(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생취업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간행물 발간 승인신청서

나. 편집 학생명단

다. 발간계획서

3. 발간된 간행물을 배부할 때에는 신청서를 지도교수 또는 계열(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생취업처에 제출한다.
4. 간행물은 승인된 목적 및 내용 이외의 사항을 수록할 수 없다.
5. 편집장은 이수성적 평점평균 B이상인 자로서 정학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 제6장 대외행사

**제15조(참가절차)** 학생이 대외행사에 참가하고자 할 때는 관련서류를 첨부하고 사전에 지도교수를 경유해서 학생취업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장 포상

**제16조(포상)** 학칙 제 49조에 의거한 포상은 총장이 이를 수여하며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포상의 구분)** 포상은 성적우수상, 공로상, 인성상, 기타부문으로 구분하고, 성적우수상은 전체 수석, 과수석으로, 공로상은 최우수 공로, 우수 공로, 공로로, 인성상은 선행, 사회봉사로 세분한다.  
<개정 2017.8.14.>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외의 표창을 할 수 있다.

1. 성적우수상<개정 2017.8.14.>

- 가. 전체수석 : 전체학기 학업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로 하되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나. 학과수석 : 전체학기 학업성적이 해당학과에서 가장 우수한 자로 한다.<개정 2017.8.14.>

2. 공로상<개정 2017.8.14.>

- 가. 최우수공로 : 재학 중 본 대학교 설립이념과 교육목적 구현을 위하여 그 공로가 현저한 자로 한다.<개정 2017.8.14.>
- 나. 우수공로 : 재학 중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됨으로써 본 대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 한다.<개정 2017.8.14.>

- 다. 공로 : 재학 중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됨으로써 본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다.<개정 2017.8.14.>

3. 인성상<신설 2017.8.14.>

- 가. 선행부문 : 재학 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내·외에서 선행을 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로 한다.
- 나. 사회봉사부문 : 재학 중 품행이 방정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궂은일에도 솔선수범하여 이웃과 더불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다.

4. 기타부문<신설 2017.8.14.>

## 제8장 징계

**제18조(징계의 구분)** 학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의 본분을 이탈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학생징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개정 2017.8.14.>

1. 근신
2. 정학(유기, 무기)
3. 제적

**제19조(근신)** 근신은 3일 이상 7일 이내로 하되, 등교수업과 특별지도를 받는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학생은 근신에 처한다.

1. 강의실이나 금연지역 내 흡연자 및 학내환경을 고의로 더럽힌 자.
2. 학내 출입금지구역을 출입한자.
3.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을 무단 부착하거나 지정장소 외에 부착하여 수업 환경을 훼손 한 자
4. 단체행사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대학당국의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자
5. 학생증을 이용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자
6. 인터넷 및 유인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한 자
7. 기타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정된 자

**제20조(유기정학)** 유기정학은 8일 이상 15일 이내로 수업을 정지하고 이 기간 동안 특별지도를 받는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유기정학에 처한다.

1. 개전의 정이 없이 제19조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
2.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는 자
3. 학우에게 협박 또는 폭행을 하는 자
4. 교직원에게 불손한 행위를 하거나 교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
5. 고의로 수업을 방해하는 자
6. 기타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정된 자

**제21조(무기정학)** 무기정학은 기한을 정함이 없이 수업을 정지하고 특별지도를 받으며, 총장이 조기 해별조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15일이 경과한 뒤에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무기정학에 처한다.

1. 제20조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2. 타인의 물품 또는 금품을 절취하거나 학생 자율비를 유용한 자
3. 불법 집회를 주도하거나 집회에 참가하여 불법 유인물을 배포한 자
4. 교직원을 폭행한 자
5. 학우의 집단폭행을 주도한 자
6. 제증명 또는 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7. 성적모욕을 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되게 한 자
8. 고의로 학교시설 및 교구를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이를 외부로 반출한 자
9. 폭행으로 인하여 학우에게 2주이상의 치료를 요하게 한 자
10. 타인의 ID 및 개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명예를 훼손하게 한 자
11. 기타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위에 준하는 행위로 인정된 자

**제22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은 제적에 처한다. 단 휴학생도 이 조항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1. 제21조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2. 집단으로 등교거부나 수업거부 및 동맹휴학을 주동한 자
3. 흉기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힌 자
4. 학외에서 본 대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5. 교직원을 폭행 상해한 자
6. 학내에서 폭력단체를 조직하거나 폭력단체에 가입을 유도한 자
7. 시험에 불응할 것을 선동하거나 동조한 자
8. 고의로 학교행정업무를 방해하거나 학교 행정실을 점거 또는 서류를 탈취한 자
9. 학생회비 및 공금을 의도적으로 유용한 자
10. 법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유죄 판결된 자

11. 타인의 금품이나 물품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자
12. 학교의 문서 또는 직인을 위조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한 자
13. 고의로 본 대학교의 중요한 시설 또는 교구를 훔치거나 파손한 자
14.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로 학생생활지도위원회가 전원일치로 인정한 자

**제23조(자격정지)** 유기정학이상의 처벌을 받은 학생은 자치활동이나 기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처벌일로부터 상실된다.<개정 2017.8.14.>

**제24조(징계의 경감)** 총장은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태도가 현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처벌을 감할 수 있다.

**제25조(보칙)** 이 규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포상학생의 선행을 고양하기 위해 이를 공고한다.
2. 처벌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취업처에서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교내에 게시하며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3. 학생취업처장, 학과장, 담당지도교수는 처벌학생을 선도·감독하여 속히 개과하도록 노력하되, 정학처벌 중에 있는 자에게는 반성문 제출, 거처의 지정, 출입 장소를 제한 할 수 있다.
4. 학생취업처장은 유기정학 이상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곧 수업을 정지 시키고 조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정계일수에는 수업 정지 일을 포함한다.
5. 해별처리는 담당지도교수가 보호자 연서로서 학생에게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다.
6. 근신 및 유기정학은 만료일로부터 해별된 것으로 본다.
7. 무기정학은 학과장과 담당지도교수의 연명건의가 있으면 정상을 참작하여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 없이 총장이 이를 조기해별 할 수 있다.

**제26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생활지도위원회 의결에 의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